

안녕하세요? 종로박문각 주말반 행정절차론을 맡고 있는 이정민입니다.  
행정사 2차시험을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

행정사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올려드립니다. 참고로  
종로박문각 주말반 2013년 7월(기본:6주반)과 8월(모의:5주반)수업을 들으  
신분들을 위해 2013년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기출문제와 유사문제를 비교  
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문제1-유제]

EX) 공청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.

(20점으로 출제/ 40점으로 출제: 2가지 출제형태로 나누어 모범답안 배부)

☞ 종로박문각 주말반 7월13일(기본:2주차) / 7월 20일(기본:3주차) 자료

[문제2-유제]

EX)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의의,기본원칙과 근거에 대하여 서  
술하시오.(20점)

☞ 종로박문각 주말반 8월 31일(모의:3주차) 실전모의고사 2번문제로 출제

[문제3-유제]

EX1) 행정예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.(20점)

EX2)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.(20점)

☞ 종로박문각 주말반 7월20일(기본:3주차) / 7월 27일(기본:4주차) 자료

[문제4-유제]

EX) 행정규제기본법 ‘규제법정주의’와 ‘규제원칙’에 대하여 서술하시  
오.(20점)

☞ 종로박문각 주말반 9월7일(모의:4주차) 실전모의고사 2번문제로 출제

## [기출1] 공청회

행정청이 불이의처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사자,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.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를 설명하시오.(40점)

### I. 의의

공청회(公聽會)라 함은 “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,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”를 말하는데 행정처분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를 행정청의 입장에서 보면 의견청취절차(意見聽取節次)라고 할 수 있다.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 의견청취라는 이름하에 의견제출, 청문,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다. 아래에서는 공청회에 대하여 서술하겠다.

### II. 인정범위

①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, ②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.

### III. 예외사유

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, ②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, ③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.

### IV. 공청회절차

#### 1. 공청회의 개최

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·공보·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

① 제목, ② 일시 및 장소, ③ 주요 내용, ④ 발표자에 관한 사항, ⑤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, ⑥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, ⑦ 그 밖의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
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(전자공청회)를 실시할 수 있다.

#### 2.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

#### (1)공청회 주재자

①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#### (2)공청회 발표자

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. 다만,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

#### (3)공정성 확보

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3. 공청회의 진행

(1)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,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,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, 퇴장 명령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.

(2) 우리나라의 경우 공청회가 통상 반나절 또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, 충분한 토론이 행해지도록 공청회기간이 정하여져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여러 번에 걸쳐 공청회가 행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발표와 토론이 충분히 행하여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.

### 4.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

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·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## V. 공청회절차의 위반과 그 위법성의 정도

개별법령상 요구되는 공청회절차를 결여한 채 발하여진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. 이 경우에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,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.

## VI. 관련문제

공청회 적용사례로는 주요법령의 제·개정, 폐지, 국민에게 중대한 정책, 제도의 도입(자동차 10부제, 쓰레기 종량제, 버스전용 차선제 등), 대립된 이해관계조정(의·약분업, 금융기관 합병 등)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.

**[기출2]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(20점)**

**I. 의의**

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·문서열람·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·자료제출요구 및 출석·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.

**II. 행정조사의 기본원칙(조, 조, 조, 준, 비, 타)**

-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.
-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III. 행정조사의 근거**

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[기출3]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/행정상 입법예고의 관련성 및 차이점(20점)

### I.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

#### 1. 개념

행정예고제도란 다수 국민의 권익에 관계있는 사항(예, 정책, 제도 및 계획 등)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.

#### 2. 대상

행정청은 ①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, ②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, ③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, ④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

#### 3. 예외사유

예고로 인하여 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②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### II. 행정상 입법예고의 관련성 및 차이점

#### 1. 행정상 입법예고 의의

국민의 권리,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 이를 행정상 입법예고제도라고 한다.

#### 2. 행정상 입법예고 방법

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은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,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·공보나 인터넷·신문·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는데. 이는 행정예고의 방법과 같다.

#### 3. 예고기간

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(자치법규는 20일 이상)으로 한다.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.

#### 4. 의견제출 및 처리

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의 제출과 의견의 처리 방법은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같다. 다만, ② 행정예고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경우와 달리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

#### 5. 공청회

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공통적으로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## [기출4] 행정규제의 개념 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대하여 설명(20점)

### I. 행정규제

"행정규제"(이하 "규제"라 한다)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(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.

### II. 규제 법정주의(4조)

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
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(上位法令)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또는 조례·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전문적·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.

### III. 규제의 원칙(5조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·인권·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·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·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.